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5.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 가. 법제처 규제개선 사례를 참고하여 시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를 자체 정비하여 개선하고자 함
- 나. 구포동 생활체육공원의 운영을 위해 사용료를 규정하고자 함
- 다. 체육진흥을 목적으로 체육회관 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무료 개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폐기물처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자에게 사전 예치하도록 하는 규정 삭제(안 제13조)
- 나. 구포동 생활체육공원 사용료 규정(별표 2, 별표 3)
- 다. 체육회관 회의실 사용료 삭제(별표 2)

3. 조례안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규제개혁T/F팀, 청렴정책팀과 합의

라. 기 타 : 조례안 붙임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후단 중 “시장은 폐기물처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하거나”를 “시장은”으로 한다.

별표 2,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위탁운영 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운영을 위탁한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이 사용료를 정하여 고시한 이후 처음으로 사용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 후 시장이 사용료를 정하여 고시하기 전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다.

■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별표 2]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제9조 관련)

구 분		평 일		토 · 일 · 공휴일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박정희 체육관	주경기장	100,000원	300,000원	150,000원	400,000원
	보조경기장	50,000원	100,000원	80,000원	200,000원
시민운동장 주경기장	트랙	60,000원	100,000원	90,000원	200,000원
	필드	150,000원	250,000원	250,000원	350,000원
	행사	600,000원		900,000원	
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	트랙	40,000원	80,000원	65,000원	160,000원
	필드	80,000원	160,000원	160,000원	240,000원
	행사	400,000원		500,000원	
복합 체육시설	인라인롤러경기장	45,000원	85,000원	65,000원	120,000원
	씨름장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농구장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다목적경기장	무료	무료	무료	무료
금오 테니스장	실외(1면 기준)	20,000원	30,000원	40,000원	50,000원
	실내(1면 기준)	15,000원	20,000원	20,000원	25,000원
구포동 생활체육 공원	클레이코트(1면 기준)	20,000원	30,000원	40,000원	50,000원
	축구장	주간	60,000원	70,000원	80,000원
		조기 · 야간	80,000원	100,000원	120,000원
	풋살장	주간	40,000원	50,000원	60,000원
		조기 · 야간	50,000원	60,000원	70,000원

○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조기(06:00~09:00), 주간(09:00~18:00), 야간(18:00~23:00) 각 1회를 적용한다.
- 다만, 필드(축구경기), 테니스장(실내만 해당), 구포동 생활체육공원(클레이코트, 축구장, 풋살장)의 경우 1회 사용시간은 2시간을 적용하고 구포동 생활체육공원의 야간 사용시간은 18:00~22:00로 한다.
-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 설치 등 준비하는 때부터 그 시설물의 철거 및 체육시설의 정리를 완료한 때까지로 본다.
-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시민운동장 주경기장 또는 보조경기장의 사용인원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료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행사 중 체육경기 외의 기준에만 적용한다.

- 1,000명 이상 ~ 2,000명 미만 : 사용료의 100분의 50 가산
- 2,000명 이상 ~ 5,000명 미만 : 사용료의 100분의 100 가산
- 5,000명 이상 : 사용료의 100분의 150 가산

○ 박정희체육관 보조경기장의 사용료는 1면당 기준으로 한다.

○ 복합체육시설의 농구장, 다목적경기장은 개방시설로 별도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별표 3]

체육시설 이용료(제9조 관련)

구 분	기 준		평일	토 · 일 · 공휴일
금오테니스장	실외	주간	8,000원	10,000원
		조기 · 야간	12,000원	14,000원
	실내		24,000원	30,000원
구포동 생활체육공원	클레이코트	주간	8,000원	10,000원
		조기 · 야간	12,000원	14,000원
○ 이용료 산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이용시간은 1면, 1회, 2시간을 적용한다. - 조기(06:00~09:00), 주간(09:00~18:00), 야간(18:00~22:00)을 적용한다. (이 경우 조기 · 야간은 조명사용료를 포함한다) ○ 다른 법령에서 공공체육시설 사용에 대한 감면 요율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요율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사용자의 책임) ① ~ ③ (생략) ④ 사용자는 시설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폐기물의 분리수거 및 처리, 현장정리 등 시설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u>시장은 폐기물처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하거나</u> 청소용역회사 등과의 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사용자의 책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u>시장은</u> ----- ----- ----- ----- -----.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2.4>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10.2.4>

④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2.4>

⑤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2.4>

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2.4>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2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12.26]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수탁재산의 이용료 등) ①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수탁재산을 사용·수익하는 자로부터 받는 이용료는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0.8.4., 2013.6.21.>

②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에 드는 경비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금액과 관리수탁자가

징수할 금액의 산정방법은 계약 전에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8.4., 2013.6.21.>

③ 제2항에 따른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6.21.>

[전문개정 2009.4.24.]

소관 실·과		체육진흥과
입 안 자	과 장	김 중 율
	담 당	임 기 동
	담 당 자	최 진 식 (480-5023)